



부천문화재단 **PAPER** 2015-7호
ssue 이 슈 페 이 퍼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과 활이야기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혜정 (부천활박물관 학예사)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과 활이야기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김혜정 (부천활박물관 학예사)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이진선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박효빈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5. 11.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 대사례와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 맺음말

저자 소개

김 혜 정

- 부천활박물관 학예사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과 활이야기

1. 머리말

우리나라는 ‘동이족(東夷族)’으로 불릴 만큼 다른 민족으로부터 활을 잘 쓰는 민족이라고 인식되었다. 활쏘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은 활쏘기 교육과 활쏘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구려는 경당(肩堂)을 설치하여 활쏘기를 익히게 했으며 신라에서는 8세기까지 관리를 선발할 때 활쏘기를 시험으로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들은 벽화에서 활을 쓰는 역동적인 궁사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활쏘기가 낯설지 않은 것이었음이 사실이다. 우리 민족에게 활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었다.

본 글은 우리나라의 활쏘기 중요성을 주목하여 조선 시대 활쏘기 의례인 대사례(大射禮)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에는 시행된 대사례는 원래 국가 제사의 참석자 선발을 위해서 실행한 의례로 조선 시대에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대사례의 큰 특징은 왕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 활쏘기가 아닌 유교적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조선의 정치이념까지 보여주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그러므로 대사례는 국가에 우환이 있을 때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 대사례는 『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大射禮儀軌』(이하 ‘의궤’)를 이용하여 대사례의 성격을 밝혀낸 연구가 있었다.¹⁾

1) 朝鮮時代 大射禮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申炳周,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28(일지사, 2002), 61~90쪽; 강신엽, 「조선 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 『朝鮮時代史學報』16(조선 시대사학회, 2003), 1~57쪽; 박종배, 「조선 시대 성균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13(한국교육사학회, 2003), 33~58쪽; 이찬우, 「조선 시대 활쏘기 의식-18세기 英 正祖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체육교육과, 2008); 심승구, 「朝鮮時代大射禮의 設行과 政治, 社會的意味」, 『韓國學論叢』32(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한문학연구실, 2009), 277~311쪽; 천호준,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15(한국체육사학회, 2010), 11~25쪽(시가순)

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대사례가 거행되는 장소가 성균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고찰해 보려는 연구가 있었다. 한편, 2000년대부터 지속한 대사례에 관한 연구는 대사례와 관련한 유물소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록과 의궤를 통해 조선 시대 8차례 이뤄졌던 대사례와 성격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정리해 보고 부천활박물관과 타박물관 소장 대사례 관련 유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가. 大射禮의 기원

전연한 바와 같이 대사례는 왕이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활쏘기 행사였다. 대사례는 고대 중국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활쏘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진나라 이전에 시행되었다고 추측한다. 중국의 대사례는 일반적으로는 주(周 BC 1046~BC 771) 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다.²⁾ 당시 활쏘기 의식은 연사(燕射), 빈사(賓射), 대사(大射)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약간씩 성격이 상이했다.³⁾ 이 중에서도 대사는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하는 활쏘기로 집사자를 선정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었다. 빈사나 연사보다 비교적 그 의식이 성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대사라고 구분하였다.⁴⁾

진한(秦漢 BC 221~AD 220)이후에는 세 종류의 사례가 모두 대사(大射)로 통칭하여 대사례는 관덕(觀德)(덕행을 관찰하는 대사례의 수양, 교육적 성격), 습무(習武)(무예를 익히는 군사적인 성격), 환오(歡娛)(활쏘기와 음악을 통해 군신과 모든 참여자가 즐거움을 나누는 오락적 성격)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 중국에서는 진한이후 대사례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대에는 '진설(陳設)-회례(會禮)-어사(御射)-상벌(賞罰)'로 대사례의 의식적 절차가 제도적 형식을 완벽하게 되었으나 중

2) 강신업, 위의 논문, 27~32쪽.

3) 賓射는 제후가 조화를 열어 이웃 나라의 임금과 함께 활을 쏘는 것을 말한다. 燕射는 한가할 때 임금의 사적인 공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즐기는 것으로 예식적인 성격이 약했다고 보인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464&cid=41826&categoryId=41826>

4) 대사례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박종배, 앞의 논문, 33~35쪽.

국사 전시기에 걸쳐 대사례가 국가적인 행사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송대(宋代) 이후 금원대(金元代)에서는 비록 대사례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世祖實錄』에서 이와 비슷한 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춘추(春秋)의 대사(大射)입니다. 대개 금인(金人)은 요(遼)나라의 풍속을 이어 받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 절하고 버드나무를 쏩니다. 이것은 비록 중원(中原)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번국(藩國)의 성사(盛事)입니다. …

명대(明代) 홍무(洪武)3년(태조, 1370)에 대사례에 대한 기록이 보여 중국에서는 명대에 이르러 대사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 고려에서는 당과 송의 제도를 모방하여 오례(五禮)중심의 국가의례를 제정하였으나 대사(大射)의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국왕이 활쏘기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은 태종대부터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종대 예조판서였던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태종에게 올렸지만 이 그림이나 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다.⁸⁾ 이후 『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 중 군례(軍禮)에서 활쏘기 단에서 왕이 친히 활을 쏘는 「射于射壇儀」와 활쏘는 모습을 관람하는「觀射于射壇儀」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⁹⁾

실록을 통해 확인된 조선 전기 왕과 신하들의 활쏘기는 정식의 대사례라기 보다 여흥을 즐기거나 활쏘기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활쏘기 성격이 강하다.¹⁰⁾ 왜냐하면 친사와 관사가 이뤄지는 곳이 주로 청화정, 경회루, 모화관(현 독립문), 궁궐의 후원 등으로 격식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공간이 아니라 활쏘기가 적당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활쏘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규범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사례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세조 2년(1456)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상소에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대사례를 실시하여 해마다 상례로 삼자는 내용은 세조 때 까지 대사

5) 박중배 위의 논문, 35~37쪽; 강신엽 앞의 논문, 32쪽.

6) 『世祖實錄』卷3, 1456年 3月 28(丁酉)日。一, 春秋大射。蓋金人承遼俗, 於三月三日、九月九日拜天射柳。此雖非中原之制, 亦藩國之盛事也。

7) 『大明會典』卷51, 禮部 9, 大射禮 강신엽, 앞의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8) 『太宗實錄』卷33, 1417年 1月 27(甲寅)日。禮曹判書孟思誠上大射禮文與圖, 上曰: “不可泥古, 予當酌古準今而爲之。”

9) 「射于射壇儀」와 「觀射于射壇儀」의 의식은 세종때 처음 당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이것이 일부 개정을 거쳐 성종대 「國朝五禮儀」에 수록됨으로써 조선조 역대 대사례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박중배 앞의 논문, 52쪽.

10) 박중배 위의 논문, 42쪽.

례의 정식 행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다만 세조연간까지 실록을 통해 확인한 바 당시는 대사례에 대해 인식만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기록을 통해 본 조선 시대 대사례의 시행

실록의 대사례 기록을 토대로 조선 시대 대사례가 정식으로 시행된 예는 총 8회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1.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사례>와 같다. 1471년 대사례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종종 29년인 1534년 까지 대사례가 지속되다가 영조대 까지 시행되지 않은 점이 보인다.

이것은 종종대 흥년이 지속되고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慈殿)의 병환으로 대사례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가 황폐화 되고 봉당의 다툼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것은 영조대 까지 대사례를 지속시킬 수 없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대사례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국가가 무사태평할 때 시행이 가능한 것이었다. 흥년과 같은 자연재해, 민란·변란, 전쟁과 같은 대내외적인 문제가 생길다면 사실상 그 시행이 불가능하였다.¹²⁾ 이것은 실록에서 종종과 문신이었던 정광필(鄭光弼 1462~1538)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상이 이르기를, “문묘(文廟)에 친제(親祭)하고 능침(陵寢)에 지알(祇謁)하는 것은 다 큰 예의인데 잇달아 흥년이 들어서 거행하지 못한 지 오래으나 올해는 농사가 웬만하므로 거행할 수 있었다. 다만 대사례(大射禮)는 근래 아주 폐하였으니 이제 또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사례는 태평(太平)을 꾸미는 성사(盛事)인데, 국가가 잇달아 흥년을 만나 성례(盛禮)를 거행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래다가 이제는 조금 곡식이 잘되었고 올해처럼 잘되는 해도 만나기 쉽지 않으나 흥년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이제 조금 곡식이 잘되었더라도 문득 큰 의례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 11) 『世祖實錄』卷3, 1456年 3月 28日(丁酉)日. 一, 春秋大射. 蓋金人承遼俗, 於三月三日·九月九日拜天射柳. 此雖非中原之制, 亦藩國之盛事也. 我東方雄據海東, 自三國至于前朝, 郊天饗帝, 無不爲之. 今固不能悉遵其舊, 稍倣遼·金故事, 於三月三日·九月九日親幸郊外, 行大射禮, 歲以爲常. 如是則庶幾張皇我武, 士氣亦增, 而自成一國一代之風俗矣.
- 12) 『中宗實錄』卷63, 1528年 10月 28日(丙寅)日. ”上曰: “親祭文廟, 祇謁陵寢, 皆禮之大者. 連因凶歉, 不行久矣, 今年農事偶然, 故已得行之矣. 但大射禮, 近來頓廢, 今亦舉行何如?” 光弼曰: “大射禮, 乃所以黃飾太平之盛事也. 國家連遭凶荒, 不得舉盛禮已久, 而今則稍稔, 如今年之熟, 亦不易得. 但凶荒已極, 今雖稍稔, 未可遽行大禮也; 강신업, 앞의 논문, 6쪽.

표1.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사례

횟수	시기	장소	목적	비고
1	성종 8년 8월 3일 (1471)	성균관	군신간 일체감 형성	『朝鮮王朝實錄』 「大射禮儀註」 *『國朝五禮儀』에도 수록
2	연산군 8년 3월 1일 (1502)	성균관	왕업 계승에 대한 책임감	구체적 절차와 기록 없음
3	연산군 11년 9월 13일 (1505)	경회루	유사시 외적의 침략에 대응. 무사 태평시에는 예악을 익히는 방편	
4	중종 29년 8월 16일 (1534)	성균관	선왕의 성대한 의식을 계승하고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5	영조 19년 윤4월 7일 (1743)	성균관	군신간 의리 확인, 왕위 계승의 정통성 확인	『大射禮儀執』
6	영조 40년 2월 8일 (1764)			총량교와 함께 실시 ¹³⁾
7	정조 3년 9월 25일 (1779)	奉謨堂에 전배 拂雲亭	신하와 화합, 왕위계승의 정통성 확인	燕射禮習儀
8	정조 7년 12월 10일 (1783)	春塘臺		燕射禮習儀

조선 시대 최초로 시행된 정식 대사례는 1477년(성종 8년), 8월 3일 성균관에서였다. 조선역사상 첫 대사례의 모습은 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친히 석전(釋奠)을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윤자운(尹子雲)과 양성자·김유(梁誠之·金紉)를 독권관(讀券官)으로 삼고, 정은(鄭垠)과 노공필(盧公弼)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중국 황제에게>각궁(弓角)을 구매(收買)하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는 표(表)를 제목으로 하여, 유생(儒生)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는데, 응시한 자가 모두 1천 4백 인이었다. 그리고 사단(射壇)에 나아가서 회례(會禮)를 베풀기를 정지(正至)때의 회례의식(會禮儀式)과 같이 하고, 술이 세 순배 돌아,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였는데, 헌가(軒架)에서

13) 1764년(영조 40) 처음으로 시행된 정시(庭試)의 일종으로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9817&cid=46622&categoryId=46622>

풍악이 연주되니, 임금이 네 대의 화살을 쏘아 1발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월산대군(月山大君)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이하 68인이 차례로 짝을 지어 활을 쏘았는데, 맞힌 자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해사(該司)에 명하여 방방(放榜)과 유가(遊街) 등의 제사(諸事)를 갖추게 하고, 신시(申時)에 윤자운(尹子雲) 등이 4인을 뽑아 아뢰니, 임금이 진사(進士) 권건(權建)을 제1등으로 삼고, 송질(宋軼)과 민사건(閔師鶯)·송윤종(宋胤宗)을 차등으로 삼았다. 임금이 단상(壇上)에 나아가서 방방(放榜)하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권건 등이 나가자, 임금이 사관(四館)에 명하여 신래(新來)를 불러서 희학(戲謔)을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내구마(內廐馬)를 타게 하였는데, 유가(遊街) 때에는 다리와 문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¹⁴⁾

위 기록에서 확인되는 조선 시대 최초 대사례는 ‘친사석전(親任釋奠)¹⁵⁾→ 중국황제에게 각궁(弓角)을 수매(收買)하도록 허락을 요청→시험을 실행→대사례(大射禮)(會禮-왕이 화살을 쏘(어사, 친사(御射, 親射))-종친, 신하들이 화살을 쏘(시사(時射))-상벌(賞罰)-방방(放榜)(합격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성종이 성균관에서 첫 대사례를 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당송대(唐宋代 614~1279) 이래로 태학에서 대사례를 거행했던 적이 없었다. 대사례가 행해지기 전인 조선전기 그 어떤 왕도 성균관에서 활쏘기를 거행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성종이 조선 초기 일반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종이 성균관에서 첫 대사례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종은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 의식을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선비를 선택하고 이로써 군신간의 의리를 확립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연주에 맞춰 활을 쏘도록 하면서 악(樂)을 익히게 함으로써 유교에서 예악(禮樂)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

14) 『成宗實錄』 卷83, 1477年 8月 3(丁酉)日. 上詣成均館, 親行釋奠. 御明倫堂, 以尹子雲·梁誠之·金紐爲讀券官, 鄭垠·盧公弼爲對讀官, 以‘本國請許收買弓角表’爲題, 命試儒生, 赴試者摠一千四百人. 御射壇, 設會如正至會儀. 酒三遍, 行大射禮, 軒架既作, 上發乘矢, 中一矢. 月山大君·嬪·領議政鄭昌孫以下六十八人. 以次耦射, 中者賞, 不中者罰如儀. 命該司備放榜, 遊街諸事, 申時, 子雲等取四人以啓. 上以進士權建爲第一, 以宋軼·閔師鶯·宋胤宗爲次. 上御壇上放榜, 百官陳賀如儀. 及建等出, 上命四館呼新來, 俾呈戲. 又命乘內廐馬遊街. 時環橋門觀聽者數千許.

15)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4807&cid=46649&categoryId=46649>

이다. 그리고 대사례를 통해 습사(習射)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이것이 유사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은 성균관에서 대사례가 왜 성균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¹⁷⁾

...그러나 반드시 학교에서 익히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의 착함을 알아내고 선비의 재질을 가려 뽑아 교화(教化) 가운데서 함양(涵養)되게 한 것이니, 어찌 과녁 맞히기를 주로 하여 힘만 숭상할 뿐이겠는가. ...

1477년 성균관에서는 8회의 대사례 가운데 4회의 대사례가 성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성종이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시행한 목적을 후대 왕들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성종의 정치적, 군사적, 교육적 목적을 염두해 둔 행동을 후대의 왕들이 모범으로 따른 것이다.

성종은 처음 대사례가 실시된 이후 예문관(藝文館)에서는 대사례 악장(樂章)을 지어 바쳤으며¹⁸⁾ 대사례의주(大射禮儀註)가 완성되었다.¹⁹⁾ 대사례의주는 대사례 시행 3일전 병조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부터 각 물품의 위치와 설치, 그날의 순서, 활을 쓰는 순서와 더불어 음악의 연주, 활 쏘는 다음의 절차, 그리고 상벌에서 의 환궁(還宮)의 절차 까지 모든 대사례 광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⁰⁾

<표1>과 같이 성종이후 대사례는 연산군(재위: 1476~1506)때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502년에는 성종 때와 같이 성균관에서 1505년에는 의정부에서 (문선왕)文宣王(공자)에게 제사를 지낸 후 경희루로 옮겨가 대사례를 거행하였다. 1502년 3월 1일 대사례는 연산군의 대사례 시행은 왕업 계승에 대한 책임감으로²¹⁾ 1505년 9월 13일

16) 박종배, 앞의 논문, 47쪽.

17) 『燕山君日記』卷43, 1502년 3월 2(丁酉)日. …然必講於學校者, 所以知人之善, 擇士之材, 涵養於教化之中, 豈惟主皮尙力而已哉?...

18) 『成宗實錄』卷82, 1477년 7월 23(戊子)日. 禮曹啓: “《通典》大射禮: ‘諸侯樂以《狸首》七節, 卿大夫樂以《采蘋》五節.’ 然古詩於今不可歌以爲節, 且《狸首》乃逸詩也, 今大射禮樂章,

19) 『成宗實錄』卷83, 1477년 8월 3(丁酉)日.

20) 이외에도 첫 번째 대사례의 시행을 찬양하는 大射頌을 南原君 梁誠之(1415~1482)가 올리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成宗實錄』卷83, 1477년 8월 6(庚子)日.

...등문을 나와서 사단에 나아가네/ 옹후를 베푸니 용깃발이 편안하네

붉은 활을 쏘시니/ 네 화살이 깨는 듯/ 전하께서 적중하사. 못 신하 하례하네. 장군 재상 모셔 쓰고/

여러 짝이 다투누나/ 좋은 상도 받으며 큰 술잔에 술 마시네/ 역경 아니라 가르침이니/ 기쁘면서 즐

거옵네 한 사라의 경사에 사방이 복종하네...

21) 『燕山君日記』卷43, 1502년 3월 2(甲戌)日.

에는 대사례를 거행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대사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천하에 사변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데 활쏘기를 쓰고 무사태평할 때에는 예의를 익히는 방편으로 대사례를 거행하고 있다고 전한다.²²⁾ 그러나 연산군 때 대사례는 군신이 함께 향락에 빠진다는 비판을 하는 여론이 있었고²³⁾ 대사례 당시 벌주를 마실 때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문신 최응현(崔應賢 1428~1507)을 불공죄(不恭罪)로 다스리는가 하면 대사례를 끝내고 환궁할 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자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모조리 형벌에 처하기도 하였다.²⁴⁾

중종(재위: 1506~1544)때는 선왕의 성대한 의식을 계승하고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사례를 거행했으나²⁵⁾ 전연한 바와 같이 흥년과 자전(慈殿)의 병환 등으로 대사례 시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영조대 대사례 재시행과 『大射禮儀勅』 제작

중종 이후 대사례가 다시 시행된 것은 영조(재위: 1724~1776)때에 이르러서 였다. 영조의 대사례의 실시는 왕권강화를 위한 국왕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즉위 초부터 그가 표방했던 탕평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집권중기인 1740년대부터 어느 정도 탕평이 실효를 거두면서 정국은 안정의 국면을 보였다.

영조의 대사례는 노론의 기세를 억제하고 탕평군주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궁밖에 나가 신하들과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활쏘기를 하는 것은 농촌에 가서 몸소 밭갈이를 하는 친경(親耕)의식과 더불어 임금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²⁶⁾

이러한 배경 아래 영조는 본인의 나이 50세를 맞아, 200년 만에 대사례를 재개할

22) 『燕山君日記』 卷59, 1505年 9月 13(甲午)日.

23) 『燕山君日記』 卷59, 1505年 8月 12(甲子)日. 傳曰: “大射禮侍射官及司糞院提調, 今日於藏義門外新亭賜宴. 且能製詩者製進. 如此事, 不肖者以爲君臣耽樂. 然太平之時, 上下相和, 朝野無事, 雖頻設華筵, 以報昇平, 有何不可? 況古之帝王, 皆有離宮, 以爲燕閒之所, 如唐之避(署)(暑)驪山. 前朝亦有長源亭, 今之新亭, 亦何妨害?”

24) 연산군 당시 대사례를 신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한 기록으로는 『燕山君日記』 卷43, 1502年 3月 18(庚寅)日; 卷59, 1505年 9月 14(乙未)日; 卷59, 1505年 9月 16(丁酉)日. 을 참조.

25) 『中宗實錄』 卷20, 1514年 2月 5(己亥)日. “近來儒生不樂就學. 興學之事, 在上之人, 鼓舞振作之耳. 且大射禮, 先王朝盛禮, 亦興學之一端也, 今可爲之.” 上曰: “興學校事, 擇賢師長而任之, 可也. 大射禮, 果是盛事, 四月間爲之, 何如?”

26)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일지사, 2005), 270쪽.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1743년(영조 19)에 이뤄진 대사례였다. 성종의 첫 대사례 행사를 기리기 위해 영조 본인 역시 성종 때와 같이 성균관에서 대사례를 시행하도록 했다. 대사례의 시행이 영조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은 여러 면모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날 행사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大射禮儀軌』 제작이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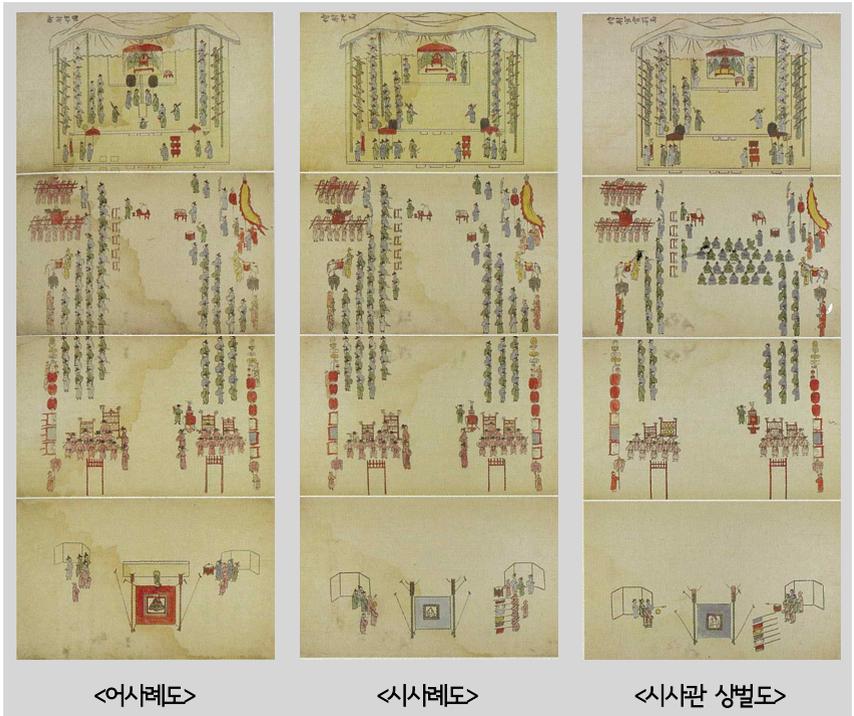
이 책은 국가 오례(五禮)의 법식을 정리한 『國朝五禮儀』와 명나라의 법전인 『大明會典』을 참고로 대사례 거행 후 예조참판 오광운(吳光雲 1689~1745)을 중심으로 대사례 의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자료이다.²⁸⁾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은 원래 총 5권으로 제작되었으나 장서각 소장본은 책의 표지에 '의정부상(議政府上)'이라고 적혀 있어 의정부 보관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 책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책의 앞면은 대사례를 시행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御射禮圖>, <侍射禮圖>, <侍射官賞罰圖>라는 이름으로 각각 4장에 그려져 있다.

<아사례도>는 위에서부터 임금의 활쏘기 장면을 시작으로 어가와 왕기, 악대의 연주, 임금이 쓸 수 있었던 옹후(雄侯)-곰이 그려진 붉은 과녁-를 그렸다. 왕을 그려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日月五峰圖>를 그려 왕이 있음을 표시해 두었다. <사사례도>는 신하들의 활쏘기가 이어지며 맨 밑에는 신하들이 쓸 수 있는 미후(麋侯)-사슴이 그려진 파란 과녁-를 그렸다. <시사관상별도>에서는 활쏘기를 잘한 사람은 상으로 오른 쪽 탁자에 있는 옷감과 활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왼쪽 탁자에 있는 술을 벌주로 주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각 장면을 순서대로 자세히 그려놓아 실제로 이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27) 영조는 200년 만에 재개된 대사례에서 중종이 맞던 화살수와 자신이 맞던 화살수가 같다는 점에 감격해 하기도 하고 성균관의 명륜당에 현판을 걸게 하고 六一閣을 짓고 대사례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보관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英祖實錄』 卷57, 1743年 潤 4月 7(庚申)日.

28) 제작은 예조참판 오광운, 병조전랑 이섭원, 예조좌랑 남언옥이 참여하였고 예조와 병조에 소속된 서리 등이 참여하였다. 畫眞, 冊匠도 참여하였다. 영조의 대사례는 200년 만에 이뤄지는 행사였다. 그이 때문에 가장 먼저 참고한 것이 대사례를 거행했던 성종대와 중종대의 일이었고, 그 내용을 강화 정족산성 사과의 실록에서 찾아 오도록 李命坤에게 명령 하였다. 영조는 대사례를 성대한 행사로 거행했지만 대사례에서 왕이 술을 마시는 행사를 없애는 등 검소하게 치르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성근, 활쏘기 의례의 모범, 『한국무예사료총서』(2009), 12~19쪽.

29) 『대사례의궤』는 앞면에 목서로 御覽用, 史庫 保管用, 禮曹 保管用, 成均館 保管用, 議政府 保管用이라고 적혀 있어 모두 5부가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규장각 본이 전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는 이 책을 2001년에 영인본으로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申炳周의 자세한 해제가 실려 있다. 한영우, 앞의 책, 주. 42참조.



<도1>. 『大射禮儀軌』에 그려진 대사례의 모습, 1743, 서울대학교 규장각 장서각

각각의 그림은 당시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여 대사례가 치러진 장소,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사용된 기물들을 상세히 표현하여 당시 대사례 행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大射禮儀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大射禮圖解」인데 이름 그대로 앞의 그림에 대한 상세한 풀이라고 볼 수 있다. 대사례는 작헌례(酌獻禮)를 시작으로 문무과의 과거시험에 이르기까지 성대한 의례였다. 긴 시간의 그림을 3장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사례도해라는 글을 만들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표2. 「大射禮儀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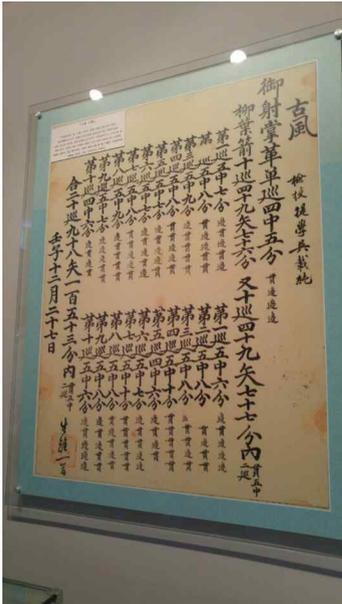
구분	원전 (原典)	내용
어사례도(御身射禮圖) 시사례도(侍身射禮圖) 시사관상벌도 (侍射官賞罰圖)	4·15년	대사례를 시행할 때의 모습을 그림, 군주의 시종 및 어가, 호위군, 시사관, 악기의 배치 및 악관의 정열, 활쏘기 할 때 궁시 및 관련 제구, 상탁, 별탁의 배치를 묘사
대사례도해 (大射禮圖解)	16·22년	군주의 출궁, 석전제, 어사, 시문 문무과 시행 및 합격자발표, 환궁의 모습을 기술
제잡차급사관좌목 (諸執事及侍射官座目)	23·29년	집사자의 명단, 시사관 30명에 대한 명단(총친, 의빈10명, 문신 10명, 무신 10명)
계사질(啓辭釋)	31·47년	대사례 시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3월 27일부터 대사례를 종결하고 마무리 단계인 윤4월 9일까지 군신간의 논의 내용을 기술
의주질(儀註秩)	119·40년	의주질(儀註秩)에는 문헌작헌예시(文廟釋齋禮豐誦), 출환궁의(出還宮儀), 문헌작헌예의(文廟釋齋禮豐誦), 문과시추의(文科試取義), 대사례의(大射禮儀), 무과시추의(武科試取義),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義)의 의식 절차가 상세히 기술
이문질(移文秩)	141·43년	6조에서 예하 부서에 보내는 공문 수록 이것은 사단(射射壇), 과녁 설치 등 대사례시행과 관련한 예하 부서에 지시하는 내용
감결질(甘結秩)	143·45년	
물목질(物目秩)	155·17년	대사례를 시행할 때 사용되는 제구(諸具)를 나열, 제구는 활, 화살, 옹후, 미후, 상별탁 등등
대사예기(大射禮記)	173·173년	예문관 제학 원경하가 윤4월 16일에 지은 글, 원경하는 영조 19년에 시행한 대사례의 배경, 과정, 의의등을 서술
의궤부 (儀軌部)	177·183년	궤를 제작한 관원의 명단, 의궤 제작과정, 예조참판 오광운의 발문 등이 수록 의궤를 제작한 중심인물은 당상 예조참판 오광운(吳光雲), 낭청(郎廳) 병조정랑 이섭원(李燮元), 예조좌랑 남원옥(南彦玉)
발문 (跋文)	187·189년	제목은 없으나 해설이 편의를 위해 발문(跋文)이라 함. 예조참판(禮曹參判) 오광운(吳光運)이 「大射禮儀軌」를 영조에게 올리며 지은 발문(跋文), 대사례 거행의 경과 및 의의, 의궤 제작의 의의 등을 정리한 글

영조 19년에 시행된 대사례 시행에 대한 전모를 『大射禮儀軌』, 『大射禮圖解』에 입각하여 대사례의 의식과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영조 19년(1743)의 대사례 순서

순서	
①	영조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영화당(映花堂)에서 가마를 타고 집춘문(集春門)을 나옴
②	하련대(下輦臺)에 이르러 악차(輦次)로 들어와 면복(冕服)을 갖추고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 행함
③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명륜당에 나아가 문과시험을 보고 악차로 돌아온다. 악차는 3단으로 되었는데 1단은 어좌위(御座位), 2단은 어사위(御射位), 3단은 종친, 의빈(儀賓), 문무시사관(文武侍射官)의 자리. 단의 등쪽에는 세 개의 탁자를 설치하는데 1탁자에는 임금의 결습함(決拾函), 2탁자는 어궁함(御弓函), 3탁자는 어시함(御矢函)을 둔다. 탁자와 함은 홍색 사위(射位)와 옹후와의 거리는 90보(약 110미터), 후의 크기는 예기척(禮器尺) 18척. 이와 같이 8제구(諸具)를 정위치. 8개의 제구(諸具)는 임금의 과녁, 무과시험과 연습용 과녁, 각지, 팔찌, 살가림, 살그릇, 잔대, 술잔이 해당됨.
④	영조가 어좌에서 내려오면 음악이 연주, 사위로 나가면 음악이 그치고 제1시는 4절의 음악과 상응해서 쏘아 명중, 2시는 처음 활 쏘 것처럼 한다. 총 4발을 쏜다.
⑤	어사가 마치면 옹후를 걷고 미후를 펼친다. 시사자는 짝과 함께 사석(射席)에 올라 북향하고 북북했다가 일어나고 또 몸을 마주하고 읍을 하면 제1절의 음악이 연주, 이에 맞춰 첫 화살을 발사. 4발을 쏜다. 이때 맞추면 북을 울리고 못 맞추면 징을 친다.
⑥	과녁을 맞추면 흥기, 정을 맞추면 채기가 들린다. 황기는 상이고 흑기는 하이고 청기는 왼쪽, 백기는 오른쪽 시사가 끝나면 음악연주가 멈춘다.
⑦	병조판서가 적중수에 대한 기록을 알리고 맞춘 자에겐 상을 못맞춘 자에게 벌주를 내림. 상품은 매, 찬신, 성임, 광신, 동정을 표리(表裏)와 탑견(搭肩)을 받는다. 맞추지 못한 자는 무릎 꿇고 왼손에 시위 끈 활을 잡고 오른손에 치를 잡고 술을 마신다.
⑧	인이가 문무백관은 인도하고 무시관(武試官)은 과거시험자를 인솔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 영조에게 4배례(拜禮)를 올리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⑨	영조는 가마를 타고 돈화문을 통해 환궁한다.

영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재위: 1776~1800)는 신하와 화합하여 활쏘기 행사를 자주 가지면서 활을 잘 쏜 신하에게 주는 선물인 고풍(古風)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표1>, <도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조는 모두 2회의 대사례를 열었는데 이때 조상의 유품을 착용하기도 했다고 한다.³⁰⁾ 이것은 군주가 효(孝)를 표현함으로써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받고 신하와 백성에게 그 권한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古風, 국립중앙박물관

<도3>. 古風, 부천활박물관, 복제본

1792년(정조 16) 12월 19일에 국왕의 활쏘기에 같이 갔던 검교제학(檢校提學) 오재순(吳載純)에게 동짓날에 먹는 전약(煎藥)을 고풍(古風)으로 내려준 것에 관련된 문서이다.

고풍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인사 관련 관청의 종인 하례(下隸)에게 금품을 내리는 것을 말하지만, 국왕이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한 신하들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30) 강신엽, 앞의 논문, 31쪽.

3. 대사례와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부천활박물관은 활전문 박물관으로 2004년 12월 14일 중요무형문화재 故 김장환(1908~1984)의 유품 240여점을 기증받아 개관하였고 현재 500여점의 활 관련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비교적 활과 화살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관련 박물관은 부천활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파주영집궁시박물관, 서울 황학정 국궁전시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대사례 관련 유물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우선 당시 직접 사용했던 활과 화살이 현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관련 자료들은 근현대에 중요무형문화재에 의해 복원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사례가 국가의 의례로서 정착될 만큼 국가적으로 중시되었던 면을 볼 때 대사례 관련 유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박물관의 상설전 전시구성에 있어서도 매직비전의 설치, 대사례에 대한 전시구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사례 관련 자료의 이용과 대사례 의식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부분이다.

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사례 관련 자료는 예궁과 왕이 쓸 수 있었던 과녁인 옹후(雄侯)가 있으며 현재 상설실에 전시되어 있다. 예궁에 대해서는 1929년 한글학자 이중화가 우리나라 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조선의 궁술』(도4)에서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4> 이중화 『조선의 궁술』(1929), 영인본, 부천활박물관

이 책은 조선 시대 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³¹⁾

조선 시대에는 용도에 따라 7종의 활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량궁(正兩弓), 예궁(禮弓), 목궁(木弓), 철궁(鐵弓), 철태궁(鐵胎弓), 고, 각궁(角弓)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식무기가 등장하면서 활쏘기 연습용의 각궁이 전할 뿐이고 기타의 것은 영원히 사라져 쓸모없게 되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실물은 모두 사라져 그림으로도 그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글로써 그 제작을 설명할 도리가 없

31) 이성근, 『새롭게 읽는 조선의 궁술』(국립민속박물관, 2008), 72~73쪽.

으므로 다만 각궁의 제도(制度)를 설명할 뿐이고 다른 활은 명칭을 거론할 뿐이다.

조선의 궁술은 예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궁의 명칭은 원래 대궁(大弓)이다. 길이는 6척(尺)이며 제도는 각궁과 동일하나 여섯 가지 재료를 합성하여 만든다. 궁중에서 연사(燕射)와 반궁대사례(泮宮大射禮)와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예궁이라고 한다.³²⁾

부천활박물관 소장의 예궁은 대사례를 대표하는 활로 크기는 48cm에 이른다.<도5> 기증 당시 기록이 부족하고 유물카드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이 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기 힘들다. 하지만 이 활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故김박영(金博榮 1933~2011)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³³⁾



<도5>. 예궁, 48cm, 현대, 부천활박물관

츄피의 경우 바로 한번 덧대었으며 활의 두께 치고는 비교적 두꺼워 중후한 느낌을 준다. 이 활의 특징은 활의 끝 부분인 고자부분을 다른 색의 가죽으로 덧대어 장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이 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고자 안쪽으로 박취문과 기

32) 임금이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궁중에서 잔치를 열었던 활쏘기 경기를 연사라 하고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여 옛 성인에게 제향한 후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한 것을 반궁대사례라고 한다. 이성곤, 위의 책, 73쪽.

33) 중요무형문화재 제 47호 궁시장 故김박영선생님의 아들인 전수조교 김윤경 선생님의 전언.

하학적이면서도 반복적인 문양을 띠로 붙여 화려함을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흰색의 확대된 도고자는 가죽으로 싸서 만들었다. 도고자는 도고지라고도 하면 활에 시위를 맬 때 심고가 맞닿는 부분인데 크기는 큰 것부터 작은 것 까지 다양하다.³⁴⁾



<도6>. 예궁, 조선, 육군박물관

부천활박물관의 예궁과 비교되는 활로 육군박물관 소장의 예궁 2점이 눈에 띈다. <도6> 이 활은 형태가 달라 하나는 완전히 부러진 형태로 보인다. 왼쪽에 보이는 활은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단순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 오른쪽 활은 활박물관 소장의 활과 비교해 두께는 얇아 보이지만 고자 끝을 다른 색의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도7>. 옹후, 근현대, 부천활박물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34) 활과 화살에 대한 명칭은 이성곤의 앞의 책을 참조.

활박물관의 또 다른 대사례 관련 유물로는 옹후(雄侯)가 있다<도7>.35) 옹후는 왕이 쓸 수 있었던 과녁으로 대사례시 함께 연주되는 웅장한 음악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의 감화능력을 준다면 과녁은 신분에 따라 쓸 수 있었던 종류를 달리 함으로써 음악과 함께 신분질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활박물관 상설실에 대사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직비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대사례의궤』의 어사례도(御射禮圖)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생소한 왕실 활쏘기 행사인 대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도8>.



<도8>. 대사례 소개 매직비전

35) 明代에는 천자를 虎鵠, 황태자는 熊鵠, 親王과 文武1·2품은 豹鵠, 3품에서 5품은 鷲鵠을 6·9품은 狐鵠을 文武관 자체와 뛰어난 士民은 布鵠(베로 만든 과녁)을 사용. 『明史』 권57, 『志』33, 禮11(軍禮), 大射. 강신업 앞의 논문, 12쪽; 조선에서는 임금은 옹후, 신하는 미후를 사용 : 『大射禮儀軌』, 『物目秩』, 大射禮時所用諸具. 『大射禮儀軌』를 통해 볼 때 조선은 중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나름 절차를 단순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 맺음말

활쏘기는 중국 고대부터 무예의 수련과 더불어 정신을 수양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³⁶⁾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활쏘기를 단순 무예의 습득으로 보지 않고 덕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겼고, 이를 국가행사로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사례(大射禮)라는 행사였다. 중국에서는 고대이후로 대사례가 성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471년(성종 8년)에 처음으로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시행하였다. 성종부터 중종 때 까지 대사례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다가 국내외적인 내우외환의 문제로 영조이전까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사례가 군신간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신분간의 질서와 왕권을 확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 시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1534년(중종 29)에 대사례가 시행된 이후로 지속되지 않다가 200년 만인 1743년(영조 19)에 재개된 점이다. 이 역시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한 후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영조의 왕권안정을 천명하고자 자신의 50세 생일을 맞이하여 시행하게 됐다. 특히, 영조는 이 대사례의 모든 과정을 『大射禮儀軌』로 기록하여 대사례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이를 통해 대사례의 진행과 필요한 물품 등 국가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활쏘기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대사례라는 국가적인 행사로 시행되어 활전 문 박물관인 우리박물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할 역사적인 주제이다. 활박물관의 대사례 관련 유물과 전시물은 화살인 예궁과 과녁인 응후, 대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직비전이 있다. 특히 예궁은 활박물관의 개관당시 중요무형문화제 제47호인故 김박영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1929년 출판된 이중화의 『조선의 궁술』과 육군박물관의 예궁을 토대로 제작한 복원품으로 확인되었다. 복제품이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예궁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활전문박물관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 행사인 대사례를 관람객에게 더욱 부각 시키

36) 禮記》46편, 「射儀」射者, 男子之事也, 因而飾之以禮樂也. 故事之盡禮樂而可數爲, 以立德行者莫若射, 故聖王務焉. … 是故古者天子之制, 諸侯歲獻 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故曰, “射者, 射爲諸侯也.” 是以諸侯君臣盡志於射以習禮樂. 夫君臣習禮樂而以流亡者, 未之有也. 또한 활쏘기는仁의 길이다. 활쏘기는 바르게 되는 것을 몸에서 구한다. 몸을 바르게 한 후에 발하여 發해서 맞지 않으면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신에게 잘못을 구할 따름이다. 『孟子』公孫丑 上, 仁者如射, 射者正己而後發. 어질다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것은 자신을 바로 잡은 후 발하는 것이다.

고 이를 전시와 교육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소장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大射禮儀軌』

『孟子』

『禮記』

『朝鮮王朝實錄』

【단행본】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이성곤, 『새롭게 읽는 조선의 궁술』, 국립민속박물관, 2008.

【논문】

申炳周,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28, 일지사, 2002, 61~90쪽.

강신엽, 「조선 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 『朝鮮時代史學報』16, 조선 시대사학회, 2003, 1~57쪽.

박종배, 「조선 시대 성균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 13, 한국교육사학회, 2003, 33~58쪽.

이찬우, 「조선 시대 활쏘기 의식-18세기 英·正祖시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8.

심승구, 「朝鮮時代大射禮의 設行과 政治, 社會的意味」, 『韓國學論叢』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한문학연구실, 2009, 277~311쪽.

천호준,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15, 한국체육사학회, 2010, 11~25쪽.